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50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김록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2. 16. 접수 제50828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보전채권

가) 주식회사 D은 C에게 ① 2015. 3. 16. 500만 원, ② 2016. 4. 11. 390만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C은 2016. 11. 30.(위 ① 대출) 및 2016. 12. 6.(위 ② 대출) 이후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5. 12. 28.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C은 2016. 11. 30. 이후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은 2017. 5.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C의 사해행위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 같은 날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이 법원 2016. 12. 16. 접수 제50828호)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가액은 126,312,420원(= ① 이 사건 토지 순번1 40,875,120원 + ② 이 사건 토지 순번2 81,647,280원 + ③ 전남 무안군 F 임야 856㎡ 중 258/856 지분 3,790,020원)에 불과하였는데, 소극재산은 적어도 1억 5,9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는데[① G조합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6,000만 원 + ② H 주식회사 대출채무 4,917,000원 + ③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대출채무 8,561,000원 + ④ 주식회사 D 대출채무

7,441,336원 + ⑤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금 18,710,000원 + ⑥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금 최소 6,000만 원 등]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설정계약에 근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게 2014. 1. 28.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설정행위 당시까지 C에게 합계 7,871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로서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C은 단순히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설정행위 당시 C의 무자력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액수, 이 사건 설정행위 당시 C의 무자력 및 C의 사해의사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나. 피고는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설정행위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